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40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 김한규·진선미·장철민

민병덕 • 강훈식 • 김태년

윤준병 • 백혜련 • 박정현

임미애・박희승・이용우

이재정 • 박홍근 • 양부남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, 그 중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 유족 외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.

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,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 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(보훈병원을 포함)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. 또한, 의료지원의 기준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률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통일성을 갖추고자 함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 전단 중 "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"을 "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그 진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.

제17조제6항 전단 중 "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"을 "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따른"을 "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의 범위,"로, "국가보훈부령"을 "대통령령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④ (생	제17조(의료지원) ① ~ ④ (현행
략)	과 같음)
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	5
족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	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	
서 진료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	
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	
진료하게 할 수 있다. <u>이 경우</u>	
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	그 진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
하는 바에 따라 감면(減免)하며,	제4항을 준용한다.
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	
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	
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	
부할 수 있다.	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	6
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	
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	
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	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	
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	
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	
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	
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	

<u>Q</u> 0	구가가	부담한다.
중근	- 十フドノド	十分 针片.

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
 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
 의 방법・절차・범위 및 상한
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<u>국가보훈</u>
 부령으로 정한다.
- ⑧ (생 략)

⑦
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
체의 의료기관의 범위,
<u>대통령령</u> -
⑧ (현행과 같음)